

인천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1나791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1나79189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1. 18 선고 2020가단12205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최충현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울

담당변호사 김범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

담당변호사 하동균

변론 종결2023. 4. 26.

판결 선고2023. 5. 24.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1. 18. 선고 2020가단12205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원고의 추가청구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4. 11. 7. 접수 제52778호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2019. 12. 9.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전세금반환채권 전부 양도계약 및 같은 날 체결한 현금 120,000,000원 지급 약정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D(E생)에게 제1항 기재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9. 12. 10. 접수 제48681호로 마친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유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쪽 기초사실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마.항을 추가하며, 기초사실의 인정근거로 "갑제25호증, 을제3호증, 제1심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를 추가한다.

라. 한편 피고는 C의 의뢰로 각종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자로, C과 피고는 2019. 12. 9. 기존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여 C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총 3억 원으로 하면서 그 변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합의를 하였다.

○ C은 위 공사대금 채권 변제를 위하여 2019. 12. 9.로부터 3일 이내에 현금 120,000,000원을 피고에게 계좌이체 하여준다(이하 '이 사건 변제합의'라 한다)

○ C은 위 공사대금 채권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 180,000,000원을 피고에게 양도한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마. C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같은 달 10.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48681호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한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2020. 3. 16.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또한 C은 2019. 12. 12. 이 사건 변제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계좌이체 해 주었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각주1)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항목에 아래의 다)항을 추가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다) 나아가 원고는 C이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총 437,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3억 원으로 감액하여 정산하기로 한 것은, 특히 변제기 도래 전인 공사대금

77,000,000원까지 위 감액합의에 포함하여 함께 정산하였다는 점에서 사해성을 띠고, 이러한 정산합의와 함께 이루어진 이 사건 변제합의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은 12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 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25호증, 을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19. 12. 9. 기준 피고에게 437,000,000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변제합의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피고가 원래 가지고 있던 채권 액수와 그 감액비율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C와 피고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통모하여 이와 같은 변제합의에 이르렀는지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 아래 가)항을 추가한다.

가) 피고는 당시에 이르러 C의 적극재산으로 별지 적극재산 목록1, 2 이외에 ① C의 T에 대한 대여금 채권 합계 21억 원, ② C의 U에 대한 대여금채권 합계 55,000,000원, ③ 삼척시 V 임야 2필지(별지 적극재산 1목록의 순번 5,6) 시세차액 33,000,000원, ④ B2B팩토링 어음금 채권 119,381,420원, ⑤ IBK 연금채권 74,315,105원, ⑥ 울산 사택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1억 7천만 원 등 합계 2,551,696,525원이 추가되어야 하므로 C의 적극재산은 4,383,749,097원이고, 따라서 이 사건 변제합의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먼저 피고가 적극재산으로 주장한 위 ①, ② 각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1심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C으로부터 T, U에게 각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액수의 돈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각 이체된 돈이 C의 T, U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라거나 C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실질적 재산가치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주장한 ④, ⑤ 채권의 경우, 을 제8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C의 계좌로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위 각 돈들은 입금 즉시 T의 계좌로 출금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돈이 입금된 내역만으로는 위 돈이 C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실질적 재산가치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⑥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경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자는 C의 사내이사인 W임을 알 수 있는바, 설령 W가 피고 주장과 같이 C의 대표이사 U의 모친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W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C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실질적 재산가치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주장한 ③의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별지 적극재산 1목록 순번 5,6 부동산의 가액을 다시 산정해야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위 부분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C의 소극재산의 가액은 적극재산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채무초과를 판단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첫째줄에 단락 표시로 "나)"를 삽입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15째줄의 "을 제1 내지 4호증"을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10호증"으로 변경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현금 120,000,000원 지급 약정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지향

판사김현진

판사박강균

별지